

이 사 회 의 안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9. 4. . (제 차)	

감사규정 개정의 건

제 안 자	감 사
제 안 연 월 일	2019. 5. 2.

I. 의결주문

- 「이사회규정」 제6조 제1호에 의거 「감사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 주문함

「이사회규정」

제6조(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정관에서 정한 사항
2.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사항
3. 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
4. 기타 의장이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관」

제16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 5. (생략)
6. 재단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 11. (생략)

II. 제안이유

- 부당한 감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을 강화하고, 공정심의를 위한 재심의회를 신설하는 근거 마련

Ⅲ. 주요내용

1 감사 처분요구 및 직접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신설 [제28조]

- 감사의 처분요구에 대하여 관계직원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당사자 추가

- 면직,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인사규정에 이의신청 관련 조항이 있음
- 주의촉구, 주의, 시정 : 감사규정에 이의신청 조항 미비

- 감사 이의신청기간을 인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과 일치

[이의신청 당사자 및 이의신청 기간]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이의신청 당사자	감사의 요구에 대하여 <u>이사장이</u> 이의가 있는 때	(현행과 같음)
	〈 신 설 〉	감사의 요구에 대하여 <u>관계직원이</u> 이의가 있는 때
신청기간	1개월 이내	2주 이내

2 감사심의회 근거 규정 변경 [제30조]

- 감사심의회 근거 조항을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감사사무처리 기준 (제14조)에서 감사규정 (제30조)로 이동
- 위원의 구성은 감사사무처리기준에서 정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근거규정	감사사무처리기준 제14조 (감사심의회) 감사결과를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감사규정 제30조 (감사심의회) (현행과 같음)

[참고] 감사심의회 위원 구성

- 감사실장 · 4급이상 검사역 3인 이내

3 재심의회 조항 신설 [제31조]

- 공정한 심의를 위해 원심과 위원을 달리하는 재심의회를 신설
- 위원의 구성은 감사사무처리기준에서 정함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재심의 대 상	〈신 설〉	·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항 · 감사가 직권재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인사위원회 심의에 대한 재심 요구사항

[참고] 재심의회 위원 구성

- 내부위원 : 감사실장, 4급이상 검사역 1인 (원 처분요구 관련 감사인 제외)
지역본부장, 실·부·점·센터장 중 1인
- 외부위원 : 타 기관 감사업무 종사자 1인, 변호사 등 전문가 (필요시)

Ⅲ. 시행일자 : 이사회 의결 즉시 시행

【붙임】 감사규정 개정 전·후 대비표 1부. 끝.

【붙임】

감사규정 개정 전 · 후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제1조~제7조 -- (기재 생략) --</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감 사 실</p> <p>제8조~제16조 -- (기재 생략) --</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감사계획과 시행</p> <p>제17조~제25조 -- (기재 생략) --</p>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장 감사결과의 처리</p> <p>제26조~제27조 -- (기재 생략) --</p>	<p>(현행과 같음)</p>
<p>제28조(이의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감사의 요구에 대하여 <u>이사장이 이의가 있을 때</u>에는 이사장 및 관계직원은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u>1개월 이내에</u>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제28조(이의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감사의 요구에 대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백히 하여 <u>2주 이내에</u>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 style="margin-left: 20px;">1. <u>이사장이 이의가 있을 때</u></p> <p style="margin-left: 20px;">2. <u>관계직원이 이의가 있을 때</u></p>
<p>② 감사는 <u>제1항에</u>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현행과 같음)</p>
<p>제29조 -- (기재 생략) --</p>	<p>제29조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212 427 727 465">< 감사사무처리기준 제14조에서 이동 ></p> <p data-bbox="395 770 544 808">< 신 설 ></p> <p data-bbox="150 1346 679 1440">제 5 장 감사결과의 보고 제30조~제34조 -- (기재 생략) --</p> <p data-bbox="150 1518 679 1612">제 6 장 보 칙 제35조~제37조 -- (기재 생략) --</p>	<p data-bbox="807 371 1455 636"><u>제30조(감사심의회) 감사결과를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감사심의회 위원은 감사사무처리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 data-bbox="807 714 1455 925"><u>제31조(재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심의회를 설치한다. 다만, 재심의회 위원은 감사사무처리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ol data-bbox="807 947 1455 1211"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제28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항</u> <u>2. 제29조에 따라 감사가 직권재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u> <u>3. 인사규정 제62조(징계 등 의결 재요구)에 따른 재심</u> <p data-bbox="807 1346 1318 1440">제 5 장 감사결과의 보고 <u>제32조~제36조</u> (현행과 같음)</p> <p data-bbox="807 1518 1294 1612">제 6 장 보 칙 <u>제37조~제39조</u> (현행과 같음)</p> <p data-bbox="1046 1749 1214 1787">부 칙 (4)</p> <p data-bbox="807 1805 1447 1899">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p>